

#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12. 6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1. 11. 22.

다. 상정일자 :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2011. 12. 6)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정무 도시계획과장 )

### 가.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의 집행을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폐지(2008.3.28)로 더 이상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임.
- 2)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폐지조례 부칙에 2012.1.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 다. 관련법령

-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51호, 2008. 3.28, 폐지]
- 1)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4668호, 2008. 7.30, 폐지]

###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시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관련 사업이 남아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당분간 특별회계를 유지하되 연차적으로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2009. 3.18) 받았던 사항으로 서울시에서도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이미 조례를 폐지하였고,
- 2011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11.7.5)에서도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2008년도에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니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2008.3월 이후에는 상위법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실적이 없는 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법을 폐지함은 불가피하며 조례 시행 시기를 2012년 1월 1일부터 하는 안 부칙 제1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과규정이며, 잔여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우리 구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